

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8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2024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인한 변경

[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]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	
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합계	294,420	377,488	83,068	합계	294,420	377,488	83,068	
기금 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64,750	164,750	-	사업비	기금 융자금	200,000	200,000	-
공공예금 이자수입	3,790	3,790	-	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	86,200	86,900	700
예치금 회수	85,880	158,248	72,368	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301	301	-
			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200	1,200	-
기타(일반)회계 전입금	40,000	50,700	10,700	재무활동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0	10,000	10,000
				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2,420	2,420	-
				예치금	4,294	76,662	72,368	
				기본경비	5	5	-	

[2025년 용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	비고
합 계	294,420	377,488	83,068	
중소기업 금융지원	287,701	288,401	700 (0.24%)	
중소기업 직접용자	200,000	200,000	-	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86,200	86,900	700	·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
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301	301	-	
기금 업무대행 수수료	1,200	1,200	-	
행정운영경비	5	5	-	
기본경비(기금)	5	5	-	
재무활동	6,714	89,082	82,368 (1226.8%)	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	2,420	12,420	10,000	
예수금원리금상환	-	10,000	10,000	·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
예수금이자상환	2,420	2,420	-	
예치금	4,294	76,662	72,368	·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(10,700백만원 증)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: 10,000백만원

-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(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) : 700백만원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효진 (☎ 2133-5190)